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4호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예고

###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소재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 전문가 등으로 안전성시민검증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조사와 검증을 위한 안전성시민검증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원자력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pil696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원자력안전대책) ① 시장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에 관한 사항
3. 정부, 자치구, 원자력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 소통과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안전 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조사와 검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으로 안전성시민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시민검증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안전성시민검증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원자력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안전성시민검증단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시민검증단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력시설"이란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물리적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보타주
  - 나. 전자적 침해행위
  - 다.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7.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8.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10.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라.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入港) 또는 출항(出港)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마.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精鍊事業) 또는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아.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자. 그 밖에 방사성물질,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2.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4.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

# 비 용 추 계 서

##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 2.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요인 : 안전성시민검증단 운영, 원자력안전 홍보에 수반되는 비용

- 안전성시민검증단 참석수당,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언론홍보 등

- 관련조문

제5조(조사와 검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으로 안전성시민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시민 불안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시민검증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안전성시민검증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원자력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와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안전성시민검증단 구성·운영 경비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나. 추계 결과 : 2017년 ~ 2021년 551,500천원

- 안전성시민검증단 구성·운영 경비 : 301,500천원

- 원자력안전 홍보비 등 : 250,000천원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수입 100%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5. 작성자 : 안전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이대규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175,500	94,000	94,000	94,000	94,000	551,500
안전성시민검증단 수당 및 현장견학 임차료		125,500	44,000	44,000	44,000	44,000	301,500
원자력안전 홍보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5,500	94,000	94,000	94,000	94,000	551,500
	지방세	175,500	94,000	94,000	94,000	94,000	551,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